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012. 11. 16 (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444	(1)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445	(2)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6	(3)충주시 라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7	(4)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012. 11. 05	2012. 11. 05	2012. 11. 12	2012. 11. 12	통진 옥의원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11. 05	2012. 11. 05	2012. 11. 12	2012. 11. 12	총무과장
(3) 충주시 라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11. 05	2012. 11. 05	2012. 11. 12	2012. 11. 12	총무과장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11. 05	2012. 11. 05	2012. 11. 12	2012. 11. 12	기획감사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시장 책무(안 제3조)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5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지원사업 자문·심의를 위한 자문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행동 25필지($32,972\text{m}^2$)를 용탄동에 편입
→ 제4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단지 형태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 조정
- 나. 연수동 6필지($2,524\text{m}^2$)를 교현동에 편입
→ 한림디자인고의 일부(연수동) 지역을 교현동으로 편입
- 다. 문화동 1필지(71m^2)를 지현동에 편입
→ 청운로 주변 일부(문화동) 지역을 지현동으로 편입

(3) 충주시 라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마을명칭을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원래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개정하고,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증감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과 관련한 인용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 ⇒ 「지방자치법」 제4조2
- 나. 마을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3)
 -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읍동마을 ⇒ 엄동마을
- 다. 인구 증가지역과 주민 불편지역 통 . 반 증설
 - 칠금 32통 분통 ⇒ 32통, 37통 / 1개통 1개반 증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능이 쇠퇴한 분야(전화상담)의 인력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1,287명 → 1,286명(감 1명) (안 제2조)

- 집 행 기관 : 1,268명 → 1,267명(감 1명)
- 의회사무국 : 19명 → 현행과 같음

나.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별표 3]

- 총 계 : 1,287명 → 1,286명(감 1명)
- 일반직 등 : 1,080명 → 현행과 같음
- 기능직 : 207명 → 206명(감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가족은 장애인 보호에 따른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가족 등을 위한 지원정책은 미미한 실정임.

-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가족 전체를 복지대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과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제4산업단지가 목행동, 용탄동 일원에 조성됨에 따라 기존 경계대로 지번 주소를 부여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목행동 1-1번지 외 24필지($32,972m^2$)를 용탄동에 편입하여 산업단지 형태에 맞게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한림디자인고등학교 부지는 대부분 교현동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필지가 연수동으로 되어 있어 한 개의 법정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연수동 418-7번지 외 5필지($2,524m^2$)를 교현동에 편입하는 사항이며,

사직산사거리 주변 문화동 2676번지($71m^2$)는 도로 개설로 문화동과 분리되어 지현동에 인접하여 위치하게 되어 경계가 불합리하여 지현동에 편입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충주시 라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이전에 단순한 착오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주덕읍 사락리 읍동마을의 명칭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전부터 사용하던 엄동마을로 변경하고

세대수와 인구가 증가한 칠금초등학교 주변의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인 칠금32통을 분리하여 기존 7개 반 중 1반부터 4반은 칠금 32통 기존 4개 반으로 하고 5반부터 7반은 통을 신설하여 칠금37통 4개 반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변경하고 통·반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전화상담 분야의 기능적 인력이 퇴직에 따라 기능직의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화상담 분야는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으로 기능이 쇠퇴하여 인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원 감축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질의 : 설치비, 운영비 등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답변 :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임.

▶질의 : 센터 직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나?

○답변 : 센터에는 4명 정도 있음.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3) 충주시 라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시민행복콜센터 직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답변 : KT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

▶질의 :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나?

○답변 : 시와 KT하고 위탁업무를 체결했기 때문에 위탁비용으로 지불하게 됨

5. 심사결과

- | | |
|-------------------------------------|--------|
| (1)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 원안가결 |
|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3) 충주시 라·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